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94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이광희 · 윤건영 · 권향엽
안태준 · 이재관 · 최민희
김준환 · 송재봉 · 김성희
서미화 · 전진숙 · 김문수
이주희 · 김남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식의 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구매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구매담당자”를 각각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매담당자”를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로 하고, “받아야 한다”를 “받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의 교육참여율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u>구매담당자</u>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u>구매담당자</u>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 ----- ----- ----- <u>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u> ----- ----- ----- ----- ----- ----- ----- ----- <u>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u> -----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u>구매담당자</u>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u>받아야 한다</u> .	② ----- ----- ----- ----- <u>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u> ----- ----- ----- <u>받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의 교육참여율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